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1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 손명수·한민수·김한규

남인순 · 정태호 · 김원이

이연희 • 문정복 • 박용갑

이훈기 • 박 정 • 이건태

김현정 • 이기헌 • 정준호

박홍배 • 송기헌 • 김선민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 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,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폭우,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(公衆)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 보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실태점검) ① 국토교통부	제59조(실태점검) ①
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	
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	
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	
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	
<u><단서 신설></u>	다만,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
	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
	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
	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